



自然公園法改正案立法豫告

本會는 國立公園管理公團設立과 公園協會活性化에 全幅支持 表明

지난 7月 5日 李圭孝 建設部 長官은 建設部公告 第83號로 그 동안 劃期的인 國立公園管理를 위해 關聯部處와 檢討해서 起草한 自然公園法 改正에 따른 意見을 널리 듣기 위해 主要內容과 趣旨를 法令案立法豫告에 關한 規定에 의해 다음과 같이 公告했다. 同立法豫告는 이 날자의 第10381號 官報에 掲載되었으며, 韓國國立公園協會는 同法改正案을 即刻 檢討하고 全幅的인 贊同을 表明하였고 支持意見書도 提出했다.

1. 법령명 : 자연공원법개정안

2. 개정의 주요내용 및 그 취지

가. 공원계획의 변경에 대하여

공원계획을 재정비하지 아니하여 현지 여건과 맞지 아니한 경우가 있으므로 공원계획은 결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의 기간마다 여건 변동에 따른 타당성 여부가 검토되도록 할 것임.

나. 공원용도 지구안에서의 허용행위기준

(1) 자연보존지구내에서 공원자원과 조화되는 사찰의 증·개축 및 신축을 금지하였던 것을 문화공보부장관의 추천이 있는 사찰의 복원과 사찰 경내지에서의 불사를 위한 시설물의 설치를 허용하고 또한 자연 보존 상태의 원시성이나 수려한 자연풍경을 현저히 저해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산림법에 의한 조림·육림·벌채 등 산림 사업과 임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여 공원자원보존과 사유재산권의 보호를 조화되도록 할 것임.

(2) 자연환경지구내에 있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건축행위의 금지는 기득권 보호면에서 문제가 있으므로 당해 공원지정 이전의 건축물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증축·개축·재축 및 부대시설의 설치는 자연풍경과 조화되는 범위안에서 허용할 것임.

(3) 현재 농어촌지구에는 도시 취락의 형태가 포함되어 있어, 그 명칭이 부적당하므로 이를 취락지구로 변경하고 취락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원·약국·이용원·미용원 및 일상용품 판매시설 등으로서 건설 부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시설물의 설치를 허용도록 하여 지역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할 것임.

다. 공원관리청의 직무에 대하여

현재 국립공원의 관리업무를 각 시·도에 위임함으로써 1개의 공원을 행정구역별로 여러기관이 관리한 결과, 관리의 다원화, 업무의 중복, 재정형편 등에 따른 수동적인 공원관리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 국립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각 시·도에의 위임관리로부터 국가 직접 관리체제로 전환하도록 위임조항을 개정할 것임.

라. 공원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현재 각급 공원위원회의 심의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여 한계가 불분명하므로 공원의 지정·폐지 및 구역변경에 관한 사항, 공원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기타 공원의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명시할 것임.

마. 공원개발을 위한 기본설계 작성에 대하여

공원관리청은 공원계획에 의한 집단시설지구를 개발하거나 공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있어, 자연경관과 조화되는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원시설의 배치계획, 기본구조, 형식, 외벽의 색채, 사용재료 및 자재 등에 관한 기본설계를 미리 작성하도록 할 것임.

바. 공원보호구역내에서 건축물 및 공작물 허가 등 기준에 대하여

현재 공원보호구역내에서 건축물 및 공작물 허가 등 행위허용 기준이 명시되지 아니하여 기준 적용이 불분명하므로 취락지구에 준하여 허가 토록 할 것임.

사. 탐방객의 공원입장 제한에 대하여

공원관리청은 공원자원의 보호·육성, 훼손된 자연의 회복, 이용자의 안전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일정기간동안 지역적 범위를 한정하여 공원에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할 것임.

아. 명예관리인 위촉 시행에 대하여

공원관리청은 공원애호와 공원이용의 올바른 계도 등을 위하여 공원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명예관리인으로 위촉하여 공원의 이용 및 보전을 위한 계도를 하도록 할 것임.

자. 공원구역과 도시계획구역과 중복된 구역관리에 대하여

공원구역과 도시계획구역이 중복 지정된 곳 중에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 21조를 적용하고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으로 부터 도심쪽에 있는 공원구역에 대하여는 자연공

원법과 도시계획법을 함께 적용토록 할 것임.

차.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등의 의제사항에 대하여
현재 공원관리청이 문화재 보호구역내에서 기 협의된 공원계획에 의한 공원사업을 시행할 경우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 공원 관리업무의 중복과 공원사업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기 협의된 공원계획에 의한 공원사업 시행시에는 문화재보호법 제 20조 4호의 규정에 의한 현상변경 허가를 건축허가 시 복합민원처리의 경우와 같이 의제하도록 할 것임.

카.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설립에 대하여

건설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국립공원을 보호하고 공원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설립토록 할 것임.

(1)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2) 임원은 이사장 1인, 이사 9인 이내, 감사 1인을 둔다.

(3) 공단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가)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공원사업의 시행

(나)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공원시설의 관리

(다) 공원구역안에서의 청소 등 미화업무

(라) 기타 건설부장관이 위탁한 사항

타. 국립공원협회의 설립근거에 대하여

현재 국립공원협회의 설립근거는 민법상 사단 법인으로 되어 있어, 이를 자연공원법에 의한 법인으로 하기 위하여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의에 따라 국립공원 및 자연보존의 동호인과 국립공원구역내의 공원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도록 지도화 할 것임.

本協會 85·86年 定總等서 決議文採擇, 同法改正表明

한국국립공원협회는 85년에 이어 지난 2월 25일의 86년도 정기총회석상에서도 國土의 두뇌에 해당되는 國立공원의 무질서한 이용과 파괴의 위험을 막기 위해서는 하루속히 국립공원의 운영관리는 위임 관리但書를 삭제하고 건설부가 직할할 것을 주장하는 등 다음과 같은 결의문을 채택, 건설부 고위층에 전달했었다.
1. 국립공원의 운영관리는 건설부가 직할하고 건설부 감독의 사단법인 한국국립공원협회의 법적지위를 자연공원법에 명시해 줄것.
2. 본 협회원의 권리의무 신장을 위해서나 효과적인 공원보호를 위해 국립공원 명예관리원제도를 실시할 것.
3. 국립공원의 건설투자와 더불어 올바른 利用에 不可缺한 教育·學術調查·弘報費를 지원해줄것 외 2항
또한 李 濬 한국국립공원협회장은 지난 4월 30日字에 발간된 國立公園誌 32號의 卷頭言을 통해 建設部가 推進하는 公園管理公團新設의 重要性과 協會의 活性化를 力說하고 국립공원의 관리에 對한 건설부의 획기적인 推進을 全幅支持했으며 支持意見書도 提出한 바 있다.